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·열람일	처리기간 30 일
신청인	기관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대표자 성명	사무소 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

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촌진흥청장·산림청장·특별시장·
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.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농촌진흥청·산림청·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